

규 칙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순천시의회 의장



2018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 규칙 제39호

붙임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 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질문 시작일 3일전까지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질문서를 접수한 시장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시정질문 시작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의 2(시정에 관한 질문) ①~②(생략)	제72조의 2(시정에 관한 질문) ①~②(현행과 같음)
③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질문방식을 기재한 <u>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에 관한 질문 첫날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u>	③ ----- ----- <u>서를-----</u> <u>-----,-----시정질문 시작일</u> <u>3일전까지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u> <u>송부하여야 한다.</u>
<신설>	④ <u>질문서를 접수한 시장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시정질문 시작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④~⑤ (생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